

『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4월 22일

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 상 곤

나. 제안이유

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미시의 정원 문화산업의
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기본방향 및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 추진 (안 제4조 ~ 제12조)
- 시민참여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등 (안 제13조 ~ 제17조)
- 정원문화 조성 진흥 위원회 (안 제18조 ~ 제22조)
- 정원의 운영 · 관리, 정원박람회 등 (안 제23조 ~ 제2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전 천 수

○ 본 「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 은,

-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,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-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다수의 시민정원사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정원사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,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가 무분별하게 양성되지 않도록 인증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구미시 정원지원센터 건립 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